



長錦商船株式會社
Sinokor Merchant Marine Co., Ltd.



http://www.sinokor.co.kr TEL:(02)6496-7792 / FAX:(02)756-3866

수 신 : 화주 제위
발 신 : 장금상선(주)
제 목 : 2022년 상반기 한-일구간 유류할증료 조정 안내

1. 경제발전과 교역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화주분들의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.
2.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3.5%에서 0.5% 이하로 조정되며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.
3. 당사에서도 규제 준수를 위해 모든 운항 선박의 연료를 기존 고유황류(IFO380)에서 저유황류(LSFO)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류비용 변경분 및 단가변동에 따라 하기와 같이 2022년 상반기 한국발 일본항 수출 및 일본발 한국항 수입 항로에 대하여 변경된 유류할증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.

- 하 기 -

- 1) 시행항로 : 한국발 수출 및 한국항 수입 항로
- 2) 시행항목 : BAF
- 3) 시행일자 - 한국발 수출 : 2022년 01월 01일 (한국 ETD 기준)
- 한국항 수입 : 2022년 01월 01일 (일본 ETD 기준)

ROUTE	DRY / OPEN TOP / FLAT RACK / TANK / REEFER	
	20FT	40FT
한국발 수출	\$170	\$340
한국항 수입	\$170	\$340

*추가사항 : 6개월 단위로 요율 검토

감사합니다.